

제 호

증 표

사진
(2.5cm×3cm)

1. 성 명:

2. 생년월일:

3. 주 소:

4. 유효기간: . . . ~ . . .

위 사람은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·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·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·흙·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직 인
시장·군수·구청장